

제280회 강서구의의회 제1차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6. 15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년 6월 15일
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1 - 52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1년 5월 27일

라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
2. 제정이유

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

나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다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- 라.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- 마.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(안 제5조)
- 바.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1조)
- 사.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2조)
- 아.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3조)
- 자.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4조~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해당부서: 가족정책과
- 라. 기 타:
 - 1) 입법예고(2021. 4. 16. ~ 5. 6.) 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이 2019년 12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내용은

- 조례의 제명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1조 목적에서 근거법령을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으로 개정함
-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,

참고자료

여성폭력방지법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폭력”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.
2. “여성폭력 피해자”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3. “2차 피해”란 여성폭력 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
 - 나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)
 - 다. 사용자(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)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
 - 1)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 - 2)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 - 3)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- 4)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 - 5)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
- 6)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- 7)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- 8)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9)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

-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고.
- 안 제4조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
- 안 제5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으로
 -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
 -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정책을 추진하고,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
 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과 운영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 - 종전의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폐지하고 “여성폭력방지위원회”를 신설하였음

※ ‘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’ 와 ‘여성폭력방지위원회’ 구성 비교

| |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| 여성폭력방지위원회 |
|--------|--|--|
| 인원 | 20명 이내 | 10명 이내 |
| 위원장 | 구청장 (다만,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음) | 생활복지국장 |
| 당연직 위원 | 아동·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 국장 | 없음 |
| 위촉직 위원 | 다음 각 호의 기관·시설·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1)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) 여성폭력 관련기관 또는 시설 3)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4)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)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 6)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관련 기관 7)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| 1.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.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1)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)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) 초·중·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4)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 관련기관 5)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※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단,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는 제외 |

- 안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3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,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4조에서는 관련정보의 제공, 안 15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-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,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,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,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을 제정하였으며,
 -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·시행 의무(법 제4조),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의무(법 제18조),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(법 제19조) 등을 규정하였음
 - 본 전부개정안은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을 아동을 제외한 여성으로 하고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맞춰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 -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의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 - 또한 기존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내용에서 제외된 아동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할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·청소년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아동·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학대 방지와 보호업무도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※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정 준비중

□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)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7조(피해자 정보보호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(2차 피해 방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여성폭력 예방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20조(홍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주간, 가정폭력 추방주간, 성매매 추방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,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